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mik337@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

발 의 자 : 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식품 및 위생업소의 수요와 구매패턴이 비대면서비스, 배달문화 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식품·공중위생 업계의 경영개선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업소로의 전환이 요구됨
- 위생업소 취약분야에 대한 위생환경개선,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생업소 지원계획 및 대상, 사업의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다.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8조)
- 마.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사. 기타 사항(안 제12조~13조)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9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

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현황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군포시		
	대표자		전화번호	031- (휴대폰번호)
	건물소유 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소명		영업의 형태	
	시설		업소주변 환경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우수업소 ☐ 교육사업 참여 경영자 등 ☐ 기타()		
	지원사업	☐ 환경개선사업 ☐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 기타()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불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불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